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06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윤종군・이기헌・서미화
김남희・한창민・김우영
안태준・백혜련・전용기
윤건영・김병주・소병훈
문진석・정을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법률 제 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흡연하는 행위

5.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59조제3항제1호의4 중 “제4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흡연하는 행위
<신 설>	5.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신 설>	6.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4. ----------제7호----------
1의5. ~ 5. (생 략)	1의5.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